

1. 개정이유

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의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 신고·허가,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또한,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,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·운영 중인 저장시설의 탄화수소(THC)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 신설(안 별표 3 제2호나목 13)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시설에 마)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설)

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을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 분류에 추가함

나.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신설(안 별표 8 제2호가목 1)에 암모니아의 다)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설)

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의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90ppm 이하로 설정함

다. 기존 허가·신고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(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신설)
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

하도록 하고,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표36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하도록 규정함

라. 고체상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의 탄화수소(THC) 배출허용기준 설정
(안 별표8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)

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,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·운영 중인 고체상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의 탄화수소(THC) 배출허용기준을 비산누출시설의 누출기준농도로 규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나목 13)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에 마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)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·운영하는 시설 중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와 폐기물허가·신고증에 기재된 1일 처리용량을 합산하여 100톤 이상인 시설 또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중 퇴비·액비 자원화시설만 해당한다)

(1) 퇴비 발효시설(원료저장, 전처리, 후숙, 선별·포장 시설은 제외한다)

(2) 액비 발효시설(원료저장, 전처리, 액비저장 시설은 제외한다)

별표 8 제2호가목1)에 암모니아의 다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)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	90 이하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

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 중 “저장시설의 탄화수소(THC)의 배출 허용기준은 사업장별 저장시설의 50%에 대해서는 2024년 1월1일부터

적용하며, 나머지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”
를 “저장시설 중 고체상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의 탄화수소(THC)의 배출
허용기준은 [별표 10의2] 제3호가목6)에 따른 비산누출시설(펌프를 제외
한다)의 누출기준농도를 적용한다.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그 배출시설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3조(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2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표36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
별표 3 1. (생략) 2.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. (생략) 나. 배출시설의 분류	별표 3 1. (현행과 같음) 2.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배출시설의 분류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배출 시설</th><th>대상 배출시설</th></tr><tr><td>1) ~ 12) (생략)</td><td></td></tr><tr><td>13)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 시설</td><td>가) ~ 라) (생략) (신설)</td></tr><tr><td>14) ~ 37) (생략)</td><td></td></tr></table>	배출 시설	대상 배출시설	1) ~ 12) (생략)		13)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 시설	가) ~ 라) (생략) (신설)	14) ~ 37) (생략)		<table><tr><th>배출 시설</th><th>대상 배출시설</th></tr><tr><td>1) ~ 12) (현행과 같음)</td><td></td></tr><tr><td>13)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 시설</td><td>가) ~ 라) (현행과 같음) 마) <u>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 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·운영하는 시설 중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와 폐기물 허가·신고증에 기재된 1일 처리용량을 합산하여 100톤 이상인 시설 또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중 퇴비·액비 자원화시설만 해당한다)</u> (1) 퇴비 발효시설(원료저장, 전처리, 후숙, 선별·포장 시설은 제외한다) (2) 액비 발효시설(원료저장, 전처리, 액비저장 시설은 제외한다)</td></tr><tr><td>14) ~ 37) (현행과 같음)</td><td></td></tr></table>	배출 시설	대상 배출시설	1) ~ 12) (현행과 같음)		13)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 시설	가) ~ 라) (현행과 같음) 마) <u>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 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·운영하는 시설 중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와 폐기물 허가·신고증에 기재된 1일 처리용량을 합산하여 100톤 이상인 시설 또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중 퇴비·액비 자원화시설만 해당한다)</u> (1) 퇴비 발효시설(원료저장, 전처리, 후숙, 선별·포장 시설은 제외한다) (2) 액비 발효시설(원료저장, 전처리, 액비저장 시설은 제외한다)	14) ~ 37) (현행과 같음)	
배출 시설	대상 배출시설																
1) ~ 12) (생략)																	
13)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 시설	가) ~ 라) (생략) (신설)																
14) ~ 37) (생략)																	
배출 시설	대상 배출시설																
1) ~ 12)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
13)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 시설	가) ~ 라) (현행과 같음) 마) <u>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 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·운영하는 시설 중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와 폐기물 허가·신고증에 기재된 1일 처리용량을 합산하여 100톤 이상인 시설 또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중 퇴비·액비 자원화시설만 해당한다)</u> (1) 퇴비 발효시설(원료저장, 전처리, 후숙, 선별·포장 시설은 제외한다) (2) 액비 발효시설(원료저장, 전처리, 액비저장 시설은 제외한다)																
14) ~ 37)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
다. ~ 라. (생략)	다. ~ 라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

별표 8

1. (생략)
2.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
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
가. 가스형태의 물질
1)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

대기 오염 물질	배출시설	배출 허용 기준
암모니아 (ppm)	1)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시설 가) ~ 나) (생략) (신설) 2) ~ 6) (생략)	
일산화탄소 ~ 벤지딘 (생략)		

2) (생략)

비고

1. ~ 10. (생략)

11.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
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
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
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
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
조업,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
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
장에서 설치·운영 중인 저장
시설의 탄화수소(THC)의 배

별표 8

1. (현행과 같음)
2.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
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
가. 가스형태의 물질
1)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

대기 오염 물질	배출시설	배출 허용 기준
암모니아 (ppm)	1)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시설 가) ~ 나) (현행과 같음) 다) <u>가축분뇨 부숙유기질</u> <u>비료 제조시설</u> 2) ~ 6) (현행과 같음)	<u>90</u> <u>이하</u>
일산화탄소 ~ 벤지딘 (현행과 같음)		

2) (현행과 같음)

비고

1. ~ 10. (생략)

11. -----

----- 저장
시설 중 고체상입자상물질 저

<u>출허용기준은 사업장별 저장 시설의 50%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, 나머지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탄화수소(THC) 농도를 95% 이상 줄이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</u> 1) ~ 2) (생략)	<u>장시설의 탄화수소(THC)의 배출허용기준은 [별표 10의2] 제3호가목6)에 따른 비산누출 시설(펌프를 제외한다)의 누출 기준농도를 적용한다.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1) ~ 2) (현행과 같음)
--	--